

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6 (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5. 5. 23(월)
다. 상정일자 : 2005. 5. 24(화) 제12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5. 2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- 불용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고
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의
효율화에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평창군 공유재산
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.
-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.
- 특별회계의 세출금은 대체재산의 취득, 집단화 등 관리처분 사업에
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함.
-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본 조례안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
군유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등으로 처분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
매입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에 의한 수익증대 및 산재되어 있는 군유
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된 자금의 타용도 전용을
방지하고 군유재산의 집단화 등 토지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
매각대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특별회계 설치와 자금의 운용 및 관리
- 세입, 세출 및 타회계 전출 금지
-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
- 예산의 편성, 결산 및 운용에 대한 예
- 회계관리 및 주용규정과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

○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부 끝.